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. 12. 22 선고 2020가단660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유한회사 B

변론 종결2020. 12. 8.

판결 선고2020. 12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답 906㎡ 및 D답 9,03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① 부분 2,211㎡ 지상 철 구조물, D 답 9,03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② 부분 565.5㎡ 및 선내 ③ 부분 108㎡ 각 지상 철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, 위 선내 ①, ②, ③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강민기

별지